

■ 은행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2. 5. 9.>

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(제26조의2제1항 관련)

1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
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
3.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본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
4.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본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
5.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
6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 확인에 필요한 보고의 접수
7.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
8.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
9. 삭제 <2014.2.11>
10. 삭제 <2014.2.11>
11. 삭제 <2014.2.11>
12. 삭제 <2014.2.11>
13.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
14.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
15. 법 제15조의4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변경 보고의 접수
- 15의2.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사실 보고의 접수
16.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일인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

17.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
18.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의 심사
19.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기금등이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
심사
20. 법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비금융주력자 주식의 처분기한 연장 여부
의 심사
21.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
22.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과 그 결과의 공시
23.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
24.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
는지에 대한 심사
25.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
26.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
명령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
27.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
제16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
28.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
지에 대한 심사
- 28의2.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접
수 및 부수업무의 신고내용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지에 대한 심사
- 28의3.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 접수 및 겸영
업무의 신고내용이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
대한 심사

28의4.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의 마련

28의5.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보고의 접수

29.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

30.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의 접수

31. 법 제35조의3제5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사실 보고의 접수

32. 법 제35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

33.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명령 등의 조치
여부 검토

33의2.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

34.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
는지 여부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

34의2. 법 제39조에 따른 자산에 대한 보고의 접수

35.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심사

36.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결산일 변경 승인의 심사

37.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

38. 법 제5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약관의 제정·변경의 보고 접수 및
신고 수리

39.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받은 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

40.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권고

41.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
대한 검토

42.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여부 검토

43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심사

44.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·대리점의 신설 또는 폐쇄 인가의

심사

- 44의2.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·대리점 이전 또는 사무소 신설 신고 내용의 심사
- 45. 외국은행의 본점이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
- 46.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인가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
- 46의2. 법 제62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전명령을 위한 검토
- 47. 제1조의3제2항 각 호의 거래가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
- 48. 제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전략,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에 대한 검토
- 49. 제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여한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에 대한 검토
- 50. 제1조의7제4항에 따른 인가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
- 51. 삭제 <2016. 7. 28.>
- 52. 삭제 <2016. 7. 28.>
- 52의2.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획 또는 약정서의 제출요구, 협약의 체결
- 53.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
- 54. 제20조의5제2항제5호에 따른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
- 55. 제20조의6제3호에 따른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
- 56. 제20조의7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

57. 제20조의8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의 검토
58. 제21조제3항에 따른 출자 총액 산정 시 제외되는 금액인지에 대한 검토
59. 제21조제7항에 따른 계획의 접수
60. 제2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의 검토
61. 제2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의 검토
62. 제2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의 검토